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워터큐 내판용 경화제(Q-400)
○ 용도분류 : 경화제

나. 제품의 권리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리용도 : 자동차 보수용 도료
○ 사용상의 제한 : 권리 용도외 사용 제한

다. 제조사/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주)노루페인트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 정보제공 및 긴급연락처 : 031-467-6114 자보기술1팀(N) 임원배

2. 유해 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인화성액체(fammable liquids) 구분 3

급성독성(acute toxicity) 흡입 구분4(증기)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물질(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구분2A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1회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single exposure) 구분3 (호흡기 자극)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반복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repeated exposure) 구분2

피부 과민성(skin sensitization) 구분1

피부 부식성/자극성물질(skin corrosion/irritation) 구분2

호흡기 과민성(respiratory) 구분1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 유해 위험 문구 :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32 흡입하면 유해함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5+H336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간장, 청소, 피부, 호흡기, 혈액, 종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11항 참조(MSDS))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34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예방조치 문구

- 예방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P223 물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41 방폭형(전기 · 환기 · 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80 보호장갑 · 보호의 · 보안경 ·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61 분진 · 흙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 및 접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60 분진 · 흙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84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대응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5항 참조).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 · 조언을 구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33+P313 피부자극성 또는 흉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류는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 · 주의를 받으시오.

P342+P311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저장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3+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장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 폐기

P501 폐기율을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물질명	NFPA지수	보건	화재	반응성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 없음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 없음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 없음	
자일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번호	함유량(%)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130341-32-1	43~53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108-65-6	23~3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1,6-Diisocyanatohexane homopolymer	28182-81-2	17~27
자일렌	Xylene	1330-20-7	8~18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노출된 눈을 많은 양의 깨끗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행구시오.

자극, 통증 부기, 눈을 눈부심등 기타 증상 발생시 즉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피복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

자극, 통증등 기타 증상 발생시 전문의에게 노출부위에 대한 진찰을 받으시오.

15분 이상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노출원으로부터 피하시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호흡하지 않을 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시 흡입호흡법을 실시하지 마시오.

일방판막이 장착된 포켓 마스크나 다른 호흡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 하시오.

호흡이 곤란할 시 산소를 공급하시오.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라. 먹었을 때 :

구토를 시키시오.

의식이 없는 경우 구토를 시키지 말고, 구토 시는 머리를 영덩이 아래로 속여 폐 흡입을 방지할 것.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전문의의로부터 받을 것.

섭취한 물질의 위 세척을 통한 조기 제거는 출혈이나 관통의 전위 합병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

마.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약제, 일반적인 포말

○ 부적절한 소화제 :

직사 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

○ 대형 화재 시 :

바람을 등지고 막대한 양의 소화 약제를 안개 형태로 분사하시오.

탱크 등의 폭발 위험 경우 800M 이상 이격할 것.

적절한 보호구를 화재 상황에 따라 사용 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생성물 :

이산화탄소, 유독 탄소화합물/질소화합물/황화합물

○ 화재 및 폭발 위험 :

중급 수준의 화재 위험이 있음.

수성(수용성 제외) 제품인 경우 제품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없음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착용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방열복, 방열모, 방열장갑, 방열 장화

- 예방조치 :
 - 적응 가능한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시오.
 - 화재시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키시오.
 - 화재 진화 후 상당 시간동안 실수하여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 화재 진압 인원외 인원이 화재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6. 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착용할 보호구 :
 - 유기용재용 호흡용보호구 및 기타 적절한 보호구/보호의/보호장갑
 - 조치사항 :
 - 위험하지 않은 경우만 누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
 - 발생 증기량을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릴 것.
 -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기타 적절한 보호구/보호의/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할 것.
 - 피부접촉을 피할 것.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대기 :
 -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 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 토양 :
 - 누출된 물질을 깊은 물웅덩이의 바닥이나 격리수용 가능한 장소 또는 모래주머니를 쌓은 방벽 내로 옮기시오.
 -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 수중 :
 -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 누출된 물질을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서 적합한 용기에 옮기시오
 - 다량 누출 시 :
 -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여 출입을 금지하시오.
 -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7. 취급 및 저장 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
 -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계법에 따라 저장, 취급 할 것
 - 정전기 방전 방지를 위한 접지 등을 실시할 것
 - 유증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등을 밀폐할 것
 - 취급시 국소배기 및 환기장치 등을 이용할 것
-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 수분 증발 및 오염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는 완전히 밀폐해서 환기가 좋은 옥내에서 보관할 것.
 - 온도 : 5~35°C
 - 보관 적정 온도 : 5~15 °C
 - 보관 적정 온도 : 15~25 °C
 - 보관 적정 온도 : 25~35 °C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1)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 4) 자일렌
 - 국내규정 : TWA : 100 ppm, STEL : 150 ppm
 - ACGIH규정 : TWA 100 ppm (434 mg/m³), STEL, 150 ppm (651 mg/m³)
 - 생물학적 노출기준 : 尿中 Methylhippuric acids : 1.5 g/g creatinine(工作后)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 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 자료 없음
 - 자료 없음

- 다. 개인 보호구 :
- 호흡기 보호 :
 -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할 것.
 - 공학적 대책이 불안전하거나 근로자의 이상노출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유기용제용 호흡용 보호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토록 할 것
 -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 할 것
 -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 호흡보호는 최소 농도부터 최대 농도까지 분류됨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유기화합물용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 눈 보호 :
 - 유기용제용 호흡용 보호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토록 할 것
 -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간이세안기구(식염수) 비치 또는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 미스트 등에 의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하도록 할 것.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 할 것
 - 손 보호 :
 - 지속적/장기적 노출 시 피부 장애가 예상되므로 고무/PVC제의 볼투과성 보호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것.
 -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 신체 보호 :
 - 유출이나 엎자름 등의 위해가 있는 경우 볼 투과성 고무/PVC제의 보호앞치마를 착용 후작업하고,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 방진복 또는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 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 투명 액체
- 나. 냄새 : 특이 용제 냄새
-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 라. pH :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C) : 자료없음
- 사.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C) : 135~143°C
- 아. 인화점(°C) : 35
- 자. 증발 속도 : 자료없음
- 차. 인화점(고체, 기체)(°C) : 자료없음
- 카.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없음
- 타. 증기압 : 자료없음
- 파. 용해도 : 자료없음
- 하. 증기밀도 : 공기보다 높다.
- 거. 비중 : 0.9~1.1
- 너. N-옥탄올/물 분백계수 : 자료없음
- 더. 자연발화 온도(°C) : 499°C
- 러. 분해 온도(°C) : 자료없음
- 머. 점도 : 자료없음
- 서.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자료 없음
- 나. 피해야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 열, 스파크, 불꽃,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 마찰, 오염을 피하시오
- 다. 피해야할 물질 :
 - 산화제, 금속, 가연성 물질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 열분해생성물(탄소 등)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를 통한 흡입 : 폐이상, 호흡곤란, 저체온, 구토…….
 - 입을 통한 섭취 : 구토, 설사, 위통, 불규칙 심장박동…….

- 피부 접촉 : 자극, 화상, 신경이상….
- 눈 접촉 : 자극, 눈손상….

나. 건강 유해성 정보

1)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 급성 독성
 - 경구 : 자료 없음
 - 경피 : 자료 없음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 IARC : 자료 없음
 - OSHA : 자료 없음
 - ACGIH : 자료 없음
 - NTP : 자료 없음
 -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8532 mg/kg Rat (IUCLID)
 - 경피 : LD50 > 5000 mg/kg Rabbit (IUCLID)
 - 흡입 : LC0 > 2000ppm 3hr(1732ppm 4hr) Rat No death Not classified (ECHA)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래빗: 자극성 없음 (ECHA)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래빗: 자극성 없음 (ECHA)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기니피그/maximization test (GLP): 과민성 없음 (OECD SIDS; IUCLID)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 IARC : 자료 없음
 - OSHA : 자료 없음
 - ACGIH : 자료 없음
 - NTP : 자료 없음
 -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In vitro - Salmonella typhimurium/TA98, TA100, TA1535, TA1537 (복귀돌연변이시험, GLP):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Negative(음성), CHL Cells/염색체이상시험 (GLP):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Negative(음성), 래트 간세포/UDS시험 (GLP): 대사활성계 비존재시 Negative(음성) (OECD SIDS; IUCLID)
- 생식독성 : 래트/경구 (0, 100, 300, 1000 mg/kg/day for 44D (M) and 41-45D(F)) (GLP): 생식변수에 대한 독성 영향이 없음 래트/흡입 (500, 2000, 4000 ppm for 21D) (GLP): 기형발생 또는 다른 발생독성 영향이 없음. (OECD SIDS)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래트(수컷, 암컷)/경구 (500, 1000, 2000, 4000, 6300, 100000 mg/kg); lethargy(기면), piloerection(입모), watery eyes(습한 눈), anorexia(식욕 감퇴), shallow breathing(천호흡) 및 salivation(유연증)이 관찰됨. (OECD SIDS)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래트/경구 (0, 100, 300, 1000 mg/kg/day for 44D(M) and 41-55D(F)) (GLP): 독성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래트(수컷, 암컷)/흡입 (300, 1000, 3000 ppm for 2W) (GLP): 약간의 후각 상피 손상이 보이며, 다른 증상은 관찰되지 않음. (OECD SIDS)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 급성 독성
 - 경구 : 자료 없음
 - 경피 : 자료 없음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 IARC : 자료 없음
 - OSHA : 자료 없음
 - ACGIH : 자료 없음
 - NTP : 자료 없음
 -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호흡기계 이상,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KOSHA)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4) 자일렌

- 급성 독성
 - 경구 : LD50=3523 mg/kg Rat (EU Method B1) (ECHA)
 - 경피 : LD50 ≥ 1,700mg/kg Rabbit (NIE)
 - 흡입 : Vapor LC50 = 10 ~ 20 mg/L/4hr (NIE)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EU Method B.4 결과 1차 피부자극지수3으로 중간 자극성 (ECHA)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단기노출기준STEL 100ppm의 mixed xylene에 노출된 인체에 눈 및 호흡기 자극영향 나타남 (ECHA)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마우스 국소림프절시험 OECD TG 429 비과민성 (ECHA)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 IARC : Group 3
 - OSHA : 자료 없음
 - ACGIH : A4
 - NTP : 자료 없음
 -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시험관내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OECD TG471 결과 음성, 생체내 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OECD 474, GLP결과 음성으로 나타남 (ECHA)
- 생식독성 : 랫드 2세대 생식독성흡입반복 노출, EPA OPPTS870.3800시험결과 시험된 최고농도500ppm까지 생식 및 발달과 관련된 독성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NOAEC생식/발달/부모독성≥500 ppm 랫드를 이용한 발달 흡입독성시험OECD TG414결과 신생자 체중의 감소로 BMCL10발달=5761 mg/m³, 모체 체중감소로 BMCL10모체독성=2675mg/m³ (ECHA)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사람에서 현기증이 보고됨, 실험동물에서 현저한 각성, 진전, 마취 작용이 보고됨. 사람에게 100ppm442 mg/m³에 노출시 눈 및 상기도에 약한 자극 및 약간의 중추신경계 영향 (HSDB, IPCS, ECHA)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중추신경계에 영향 (NIE), 랫드를 이용한 103주 발암성시험EU Method B.32 결과 mixed xylene투여로 인한 전신독성 또는 발암성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음, 랫드를 이용한 90일 경구반복독성시험OECD TG408 결과 mixed xylene과 관련된 영향은 제한된 체중감소, 상대간무게간 및 신장 증가하였으나, 조직병리영향은 관찰되지 않음.NOAEL=150 mg/kg bw/day (ECHA)
- 흡인유해성 : 탄화수소, 동점성을 0.603 mPa s 25°C (KOSHA)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1) α-Meth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 어류 : 자료 없음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자료 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어류 : LC50 ≥ 100 mg/ l 96 hr Oryzias latipes (SIDS)
- 갑각류 : EC50 = 373 mg/ l 48 hr Daphnia magna (SIDS)
- 조류 : EC50 ≥ 1000 mg/ l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 (SIDS)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 어류 : 자료 없음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자료 없음

4) 자일렌

- 어류 : LC50=3.3mg/L 96 hr (NITE)
- 갑각류 : LC50 3.6 mg/ l 24 hr (OECD TG202) (ECHA)
- 조류 : ErC50 4.06 mg/ l 73 hr (OECD TG201, GLP) (ECHA)

나. 잔류성 및 분해성

1) α-Meth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잔류성 : log Kow = 0.43 (IUCLID)
- 분해성 : 자료 없음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 잔류성 : (Not applicable)
- 분해성 : 자료 없음

4) 자일렌

- 잔류성 : log Kow=3.16 (NITE)
- 분해성 : 자료 없음

다. 생물농축성

1) α-Meth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60%, 28day (OECD SIDS)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4) 자일렌

○ 농축성 : BCF25.9 (ECHA)

○ 생분해성 : 90 % 28 day (OECD TG301F, GLP)(ECHA)

라. 토양이동성

1)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자료 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자료 없음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자료 없음

4) 자일렌

log Kow = 3.12 (measured) (ortho), 3.2 (measured) (meta), 3.15 (measurements) (p) (5)

마. 기타 유해 영향

1)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자료 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자료 없음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자료 없음

4) 자일렌

Fish NOEC 56d>1.3mg/L Daphnia magna (US EPA 600/4-91-003) NOEC=1.17 mg/L(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 폐기물은 일폐용기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처리 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 무단 처분이나 소각은 자연생태계에 유해하므로 이를 금할 것.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 : 1263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페인트 (페인트, 래커, 에나멜, 착색제, 셀락용액, 바니시, 광택제, 액체 충전물 및 액체 래커 전색제 포함) 또는 페인트 관련 물질 (페인트 희석제 또는 환원제 포함)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III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E

○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E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물질"

1)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됨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제조금지율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율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율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율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율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율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율질 : 해당 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율질 : 해당 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율질 : 해당 없음

4) 자일렌

제조금지율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율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율질 : 1% 이상 일때
작업환경측정대상율질 : 1.000% 이상 일때
특수건강검진대상율질 : 1.000% 이상 일때
노출기준설정율질 : 크실렌(모든 이성체)TWA : 100 ppm, STEL : 150 ppm
허용기준설정율질 : 해당 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율질 : 해당 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율질 : 해당 됨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배출량조사대상율질"

1)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기존율질 : 해당됨
신규율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율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율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율질 : 해당 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기존율질 : 해당됨
신규율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율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율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율질 : 해당 없음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기존율질 : 해당됨
신규율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율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율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율질 : 해당 없음

4) 자일렌

기존율질 : 해당됨
신규율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크실렌[Xylene: 1330-20-7]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5 85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율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율질 : 자일렌($\text{o-}, \text{m-}, \text{p-}$ 이성질체 혼합물) 1
사고대비율질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제2석유류

1)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해당 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해당 없음

4) 자일렌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α -Methyl- ω -hydroxy 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국내(전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환경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2) 프로필렌 글라이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트산

국내(진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3) 폴리(헥사메틸렌 디아이소시안산)(POLY(HEXAMETHYLENE DIISOCYANATE))

국내(진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4) 자일렌

국내(진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ACGIH: <https://www.acgih.org/>
- IARC: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latest_classif.php
- Corporate Solution From Thomson Micromedex(<http://csi.micromedex.com>)
- NTP: <http://ntp.niehs.nih.gov/index.cfm>
- OSHA: <https://www.osha.gov/laws-regulations/standardsnumber/1910/1910.119AppA>
- NCIS: <http://ncis.nier.go.kr/>
- ECHA: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 HSDB: <https://pubchem.ncbi.nlm.nih.gov/>
- EPA: <https://pubchem.ncbi.nlm.nih.gov/>
- SIDS: <https://hpvchemicals.oecd.org/ui/Search.aspx>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http://ncis.nier.go.kr/>)
- ECOTOX Database, EPA(<http://cfpub.epa.gov/ecotox>)
-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ICSC)(<http://www.nihs.go.jp/ICSC>)
-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http://hazmat.nema.go.kr>)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관련된 정보

-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의 양식에 부합하게 관련 영문 MSDS 등을 참고하여 번역·편집한 후, 국내 관련 규제·법규·현황 등을 추가하였음.
- 국내 관련 규제법규 현황은 본 제품의 용도나 알려진 성분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수시로 바뀔 수 있음.
- 본 MSDS는 현재의 알려진 지식·경험 및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된 것이나 제품 자체를 완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할 것.
- ①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율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취급사원에 대한 교육용 및 공급자에게 기술자료로서 제공함.
② 공급자가 본 MSDS 자료외의 추가적인 자료는 UP-DATE하여 사용하기 바람.

나. 최초 작성일 : 2016-09-08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4회(2022-07-12)

라. 기타 : MSDS 게시 정보 " WWW.NOROOPAINT.COM"